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5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주진우·고동진·이양수

김민전 · 김 건 · 안상훈

박대출 • 박준태 • 배현진

최보윤 • 박정하 • 한지아

정희용 • 최은석 • 송석준

김선교 · 김승수 · 김예지

박수민 · 서범수 · 이헌승

이인선 · 정동만 · 임종득

김소희 · 조배숙 · 김기웅

곽규택 • 강선영 • 이상휘

박수영 · 서지영 · 조지연

추경호 · 김미애 · 조승환

김종양 • 우재준 • 김도읍

정연욱 • 백종헌 • 김상훈

강대식 • 조은희 • 주호영

박정훈 • 구자근 • 신동욱

강승규 · 서명옥 · 엄태영

성일종 · 김희정 · 김대식

배준영 • 권성동 • 권영세

장동혁 · 김은혜 · 서일준

이만희 · 김태호 · 박충권

김상욱 · 최수진 · 안철수

김기현 · 김위상 · 이달희 조경태 · 김정재 · 김용태 유상범 · 윤재옥 · 강민국 서천호 · 윤한홍 · 정성국 김형동 · 박성훈 · 김석기 강명구 · 박상웅 · 임이자 박덕흠 · 이철규 · 이종욱 한기호 · 유용원 · 조정훈 인요한 · 김장겸 · 송언석 최형두 · 윤상현 · 김성원 박성민 · 박형수 · 신성범 윤영석 · 이성권 · 진종오 권영진 · 이종배 · 나경원 유영하 · 정점식 · 김재섭 의원(108인)

제안이유

위원장 등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출석 국무위원 또는 증인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 장된 선서·증언 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박 또는 모욕을 하거 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하거나, 위원장에게 무조건적인 사죄를 강요하는 등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인 등의 권리 를 침해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이를 막을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위원장 등 의원에 대해 징계 또는 형사처벌도 할 수 없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위원장 등 의원이 출석 국무위원, 증인 등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을 주거나 직권남용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 회의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국회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위원장 등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원장 등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에 따른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협박·모욕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6조, 안 제154조의2 및 제155조제9호 신설).
- 나. 위원장 등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선서·증언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협

박·모욕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의4 및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다. 위원장 등 의원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7년 이하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을 가중함(안 제148조의5, 제154조의3 및 제155조제11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 중 "의원"을 "위원장 등 위원"으로, "모욕하거나"를 "협박·모욕하거나"로,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한다.

제147조 중 "의원"을 "위원장 등 의원"으로 한다.

제148조 중 "의원"을 "위원장 등 의원"으로 한다.

제148조의4 및 제14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8조의4(선서·증언 등의 거부권 침해 금지) 위원장 등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선서·증언, 감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협박·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을 명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5(직권남용의 금지) 위원장 등 의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 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장에 제154조의2 및 제1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4조의2(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모욕 등의 죄) 본회의 또는 위원 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 인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제146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4조의3(직권남용죄) 제148조의5를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원"을 "위원장 등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
 - 11의2. 제148조의4를 위반하여 선서·증언, 감정 등의 거부권을 침 해하였을 때
 - 11의3. 제148조의5를 위반하여 직권남용을 하였을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개 정 안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위 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 원장 등 의원-----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 ---- 협박·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나 명예를 아니 된다. 훼손하는 발언-----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의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위 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원장 등 의원-----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 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 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의 반입 금지) 위원장 등 의원-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 다. <신 설> 제148조의4(선서ㆍ증언 등의 거부 권 침해 금지) 위원장 등 의원 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선서 ·증언, 감정 등의 거부권을 행 사하려거나 행사한 증인, 감정

인 등에 대하여 그 거부권 행사

<u><신</u>설>

<신 설>

<신 설>

와 관련하여 협박·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장을 명하 는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5(직권남용의 금지) 위원장 등 의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의2(다른 사람에 대한 협박·모욕 등의 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에 대하여 직무와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적시하여 제146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4조의3(직권남용죄) 제148조 의5를 위반하여 그 직권을 남용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5조(징계) 국회는 <u>의원</u>이 다 기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 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11. (생략) <u><신 설></u>

1. ~ 8. (생략)

<신 설>

13. ~ 16. (생략)

제155조(징계) <u>위원장 등</u>
의원
1. ~ 8. (현행과 같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모욕하거나 다른 사람
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
<u>을 때</u>
10. • 11. (현행과 같음)
11의2. 제148조의4를 위반하여
선서ㆍ증언, 감정 등의 거부권
을 침해하였을 때
11의3. 제148조의5를 위반하여
직권남용을 하였을 때

13. ~ 16. (현행과 같음)